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18.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3. 11. 18.
- 다. 상 정 일 자 : 2003. 12. 18.(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가.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가 강화되었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제, 전자제품의 회수의무화 등이 신설되었으며,
- 위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시 별도의 이행명령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분리배출표시가 필요한 제품 또는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4호)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의 무상회수 요구에 판매업자가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호)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7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강화와 빈용기 보증금제, 분리배출표시 및 전자제품의 회수의무화 등을 생활화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며,
-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규제와 의무조항을 관련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 위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